

해상 사이버보안 시스템 지침 개정(안)

(최종)

2020. 1.



기 관 규 칙 개 발 팀

2020.01.01.일자 시행사항

(건조계약일 기준)

- 동등효력에 대해서는 규칙 1편을 따르도록 요건을 개정함.

현행	개정안	개정사유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1 장 일반사항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1 절 일반사항</p> <p>101. - 103. <생략></p> <p>104. 동등효력 <u>이 지침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특수한 설비가 이 지침의 규정에 적합한 것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우리 선급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.</u></p> <p>105. <생략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2 장 - 제 4 장 <생략>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1 장 일반사항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1 절 일반사항</p> <p>101. - 103. <현행과 동일></p> <p>104. 동등효력 이 지침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특수한 설비가 이 지침의 규정에 적합한 것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우리 선급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. 이 지침에 만족하지 않거나 적용할 수 없는 대체설계 및 신기술의 동등효력에 대해서는 선급 및 강선규칙 1편 1장 104.를 따른다.</p> <p>105. <현행과 동일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2 장 - 제 4 장 <현행과 동일></p>	<p>(개정)</p> <p>- 동등효력에 대한 요건을 통합한 규칙 1편 개정에 따라서 동등효력에 대한 요건을 개정함.</p>